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비고
4570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570
----------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7.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참여 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4호)
- 2)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안 제11조제5호)
-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정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 5) 주민참여예산의 정치적·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호)
-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시행 및 경품 제공 근거 마련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 7)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과정 전반(편성·집행·결산)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정치적·사적 이용 방지 규정을 신설,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70
----------	------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출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참여 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4호)
- 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안 제11조제5호)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정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 마. 주민참여예산의 정치적·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호)

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시행 및 경품 제공 근거 마련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
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

-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선의견 반영

5) 입법예고 : 2026. 5. 22. ~ 6. 1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립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5.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생략)	제11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5.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생략)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1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3. (생략)

③·④ (생략)

<신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③ (생략)

<신설>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운영원칙) -----

-----.

1. ~ 3. (현행과 같음)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u><신 설></u> <u><신 설></u> <u>제21조 (생 략)</u>	<u>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u> <u>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u> <u>제21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u> <u>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u>
--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재정 및 실무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8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제4항에 의해 추가 예상되는 비용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꺾 지 연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2조 (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